



제 43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식불명 등의 경우 치료비 목적 금융거래 대리 허용>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23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5. 6.

다. 회 부 일 : 2026.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거래자가 고령·중증질환 등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어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월 은행연합회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던 바, 이를 통해 기존에 제기되어왔던 은행 방문거래 관련 불편사항이 일정 부분 해결되었음.

그러나 환자 의식불명 등으로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 수여 없이 가족 등이 은행업무를 대리한 경우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다툼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기타 의식불명자 은행거래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이에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그 가족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추후의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은행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치료비 지급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가족이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거나, ② 가족이 아닌 자가 위임장 등을 제출한 경우 금융거래의 대리를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사망자 등의 치료비 지급 목적 금융실명거래 대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이하 “은행이용자”라 한다)가 사망, 의식불명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치료비 지급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의 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 1. 은행이용자의 가족인 자가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은행이용자의 가족이 아닌 자가 금융거래에 대한 은행이용자의 위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는 은행이용자 본인의 거래로 본다. ③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대리권한은 후견인의 권한에 반하는 범위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대리의 요건 및 범위,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은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¹⁾으로, 제3조에서는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가 있고, 거래자의 실명 여부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확인²⁾하여야 함.

○ 다만, 금융회사등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³⁾.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각목 생략)

-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⁴⁾ 등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하고 있음.
-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금 인출 등을 요구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음.
- 만약, 은행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예금이 인출될 경우, 예금채권자(정당한 권리자)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며, 예금채권자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임⁵⁾.
- 이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는 현행법에 따른 실명확인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에 따른 사안에 해당함.
- 한편, 적법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으며⁶⁾,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리인이 본인의 금융거래를 대리하려는 경우 적법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실명·본인확인을 거쳐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

4)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 2026.2.)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 함은 실명확인된 계좌의 입출금*, 해지 및 이체 등을 말함(재예치 등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경우는 계속거래가 아님)

* 통장, 거래카드(현금, 직불카드 포함) 등으로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통장 입금(송금)과 구별

5)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합5295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13 판결 등

6)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구체적으로 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통장 또는 예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함⁷⁾.

□ 이와 같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예금 인출 등과 같은 계속거래의 경우에도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예금주가 질병·부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금 인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금융감독원의 ‘치료비 목적 본인 예금 지급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은행들은 2013년 9월부터 예금주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되, 예금주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경우만 예금 인출을 허용해왔음.

○ 감사원은 지난 2023년, 뇌경색으로 입원한 80대 노인이 ‘병원비’를 인출하기 위해 병실 침대에 실린 채 구급차로 은행을 방문하였다는 기사⁸⁾가 보도된 이후 5대 은행을 대상으로 거동불편 환자의 예금 인

7)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가족간에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있을 경우 대리권을 인정하는 ‘가족대리’를 허용해왔다는 입장임.(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30190 참조)

8) 연합뉴스, ‘[OK!제보] 콧줄 단 80대 중환자, 병실침대 끌고 은행 간 사연’, 2023. 1. 29.

출방식을 점검한 결과, ① 은행별로 예금 인출을 허용하는 대상 및 범위가 다르고, ②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관련 내용이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3년 4월,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을 통해 예금주 가족이 존재할 경우 지급절차를 간소화⁹⁾하고,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와 지급대상 의료기관을 확대¹⁰⁾하였음.

[표 1]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

예금주 상황			신청	지급 대상	지급 방식	필요서류
의식불명(CASE 1)			가족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 계좌 등 직접 입금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의식인출 불가	거동	가족 존재 (CASE 2)				위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
		가족 부재 (CASE 3)				
사 망(CASE 4)			가족	장례비, 치료목적 비용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장례식장, 병원계좌 등 직접 입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병원비·장례비 영수증 등

□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의식불명자 등의 대리 금융거래와 관련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금주의 의식불명 등의 상황에서 금융거래 대리 업무로 인한 법적 다

9) 기존에는 예금주의 의식이 있는 경우 거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징구하였으나, 개선 방안에서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 없이 요청에 따라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10) 기존에는 가장 보수적인 은행 기준으로 긴급한 수술비에 대해서만 병원을 대상으로 직접 이체하였으나, 개선 방안에서는 수술비 외에 입원비, 치료비 등 치료 목적 비용에 대해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대상으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틈을 예방할 장치가 없다는 인식하에, 현행법상 치료비 지급 목적 금융거래 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은행 이용자가 사망, 의식불명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치료비 지급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한 경우, 은행이 금융거래의 대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러한 금융거래의 대리는 본인의 거래로 간주하고 있음.

- 그 밖에 은행 이용자에 대해 성년후견인¹¹⁾ 등이 선임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융거래 대리 권한은 후견인의 권한에 반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가족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게 되고¹²⁾,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은 가정법

11) 민법 상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성년후견(제9조), 한정후견(제12조), 특정후견(제14조의2), 임의후견(제959조의14)이 있음.

종류	내용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특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임의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12)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원으로부터 금융거래의 대리권을 수여받을 수 있으며¹³⁾, 임의 후견인은 후견계약에 따라 금융거래 대리권을 수여받을 수 있음¹⁴⁾.

- 개정안의 위 내용은 의식불명자 등에 대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에 반하여 금융거래 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과 같이 의식불명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대리와 관련한 통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무권대리 주장 등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특례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게 거래자의 실명 확인 등을 통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3) 「민법」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14)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되어 있으며, 그 외에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본인확인 또는 대리권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그 취지상 치료비 지급 등을 위한 목적의 예금 인출 과정에서 금융거래 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 실명 확인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거래는 현행법상으로도 실명 확인 대상이 되지 않음.

-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 과정에서 본인확인 또는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은행과 이용자 간의 계약 또는 「민법」상 대리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이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은 법에서 규율하지 않은 사항을 특례로 정하는 것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 금융위원회도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 또한, 개정안의 특례 내용을 현행법에 신설하게 될 경우 실명 확인 대상이 되는 신규 계좌 개설 등 예금 인출 외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대리 권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비해 그 적용 범위가 좁혀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행법상 금융회사등¹⁵⁾ 중에서 예금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외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존재하고 있음.

-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한정할 경우, 예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금융기관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위 특례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는 은행 외에 증권사 등 타 금융회사도 존재하므로, 제도적 실효성 및 업권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의식 불명자 등의 치료 목적 금융거래를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일적

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인 금융거래 대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현행법의 목적과의 부합 여부 등 법 체계성, 적용 대상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6